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00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9.
3. 회 부 일 : 2024.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역의 존립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상황임.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또는 내국인근로자만으로는 지역 경제 및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외국인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출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및 정착지원 등 필요한 절차들이 별개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인구변화 및 지역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출입국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지원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에 참조하도록 하여 장기계획에 대응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및 거주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에 적극 대응하려는 취지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1항 개정).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의 발급, 출입국 절차, 거주·취업·정착지원 및 준법교육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8조의2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근무처 변경·추가 등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의 발급, 출입국 절차, 거주·취업·정착지원 및 준법교육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
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
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
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취업하는 경

② · ③ (생략)	<u>우를 포함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통계청 발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0년 5,131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2년 3,622만명에 이를 전망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서울·경기·인천의 주민등록 인구와 나머지 지역 주민등록 인구의 격차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2019년 1,747명에서 2023년 70만 3,201명으로 벌어졌음.

[2014~2023년 전체 인구 및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이]



※ 자료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지역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임.¹⁾ 2024년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에 따라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²⁾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지역	인구감소지역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자료 : 행정안전부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2022. 2. 10.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13호) 제2조 제3호의 관심지역의 정의에 따라 추가적으로 18개 시·군·구가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이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공백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의 유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민 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외국인 유치·정착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유치에 힘을 쏟고 있음.³⁾

(2)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체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이 보다 용이하게 외국인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인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다만, 다음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현행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상의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3)○ **(경상북도)** 2023년 지방시대정책국 산하에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였으며, 2024. 2. 경북도립대학에 글로벌 한글학당을 개설해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경상남도)** 제조업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목표 외국인 산업인력을 6만 700 0명으로 정하고, 인력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 **(충청북도)** 인구 감소에 따른 도내 대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2023.1. 마련함.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외국인 석·박사 과정 선발 인원 50여 명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한국어 연수 기회를 제공함.
- **(전라남도)**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인구청년이민국(3급 TF)'으로 격상해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등을 추가 배치하였고,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발표에 발맞춰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과'를 추가 설치하였음.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단기체류자격 중 단기취업(C-4), 장기체류자격 중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및 방문취업(H-2)이나,⁴⁾ 「외국인고용법」 및 동법 시행령은 이 중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만을 “외국인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⁶⁾

[단기체류자격⁵⁾ 중 단기취업(C-4)]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5. 단기취업 (C-4)	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까지 및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장기체류자격7) 중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체류자격]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4. 교수 (E-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5.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7.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18.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9. 예술행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0.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0의2. 계절 근로 (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1. 비전문취 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선원취업 (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개정안 제18조의2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외국인고용법」 제5조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⁸⁾을 참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범위보다 좁은 범위의 외국인근로자에 한정되므로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에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현행법상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02-6788-5053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략)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